

#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12. 24(목)  
건설교통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9. 12. 14
- 나. 제안자 : 성용기·문희출 의원 외 8인
- 다. 회부일자 : 2009. 12. 14
- 라. 상정일자 : 2009. 12. 17(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성용기 의원
  - 검토보고 : 건설교통전문위원 김동호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설계 경제성 검토(VE)의 전문가 참여를 위한 설계 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설계업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며,
- 군·구 또는 공사·공단 및 특수 법인 요청 사안,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추가하는 등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확대 및 심의수당 현실화를 통해

심의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함(안 제7조).
  - 1) 「지방계약법」 제9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2)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 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
  - 3) 인천광역시총사업비관리지침 제22조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4) 군·구 또는 공사·공단 및 주요 특수목적 법인(SPC)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건설기술심의
  - 5) 건설기술 관련 검토·확인·평가
    -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사항
    - 나)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확인
    - 다) 용역 및 시공평가 등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위해 설계심의분과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 관계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함.
- 설계 경제성 검토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설계경제성검토편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함.
-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1) 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를 구성함.
  - 2)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함.
- 품질관리, 용역 및 시공 평가 등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을 참여하도록 함(안 제15조).
  - 심의수당을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특급기술자 임금으로 조정하여 현실화하고, 수탁심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설치하며 심의 수당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안임.
- 지방건설기술심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비가 100억이상인 경우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있음.
- 안 제7조에서 심의범위에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과 시설물의 정밀 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 총사업비 변경사항, 공사·공단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추가하였고
-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심의 대상에서 분야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설계경제성검토(VE)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위원회에 둘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9조에서는 심의수당을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특급기술자 임금으로 조정하여 현실화 하였으며, 수탁심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음.

- 여타 내용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안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건설초기 단계부터 예산을 절감하고 설계심의 투명성과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서 건설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시행에 적정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상위법 개정에 따르는 것으로 원안동의 하고자 함.

#### 5. 토론요지

- 가. 찬성 : 강문기, 노경수, 박승희, 성용기, 이재호, 이은석 위원
- 나. 반대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해당사항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 6명)

#### 8. 기타 특이사항

-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검토 등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시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정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⑥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와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 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심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에 참여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6.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7. 특정 심의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잃은 경우
8.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9.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10.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11. 경력, 학력, 부패행위 전력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12.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술심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2. 시행령 제21조제5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시설물 제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인천광역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2조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및 시 또는 공사·공단에서 출자한 주요 특수목적 법인이 요청하는 사항
6. 「건설기술관리법」(이하“건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확인·평가 등을 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8조의13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2. 건기법 제24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확인
3. 건기법 제36조에 의한 용역 및 시공 평가 등

**제8조(심의요청)**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고시 및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
  2. 특정공사 및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서
  3.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각종 보고서 및 계 산서
  4. 입찰안내서, 공사예산 산출근거
  5. 분리발주 가능여부 검토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공동도급 기준 및 지역생산 자재 우선활용계획)
  6. 기타 심의부서에서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 ②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술변경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 설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기타 설계변경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의3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 정수를 50명을 초과하여 구

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및 군·구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10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중앙위원회 위원”은 “지방위원회 위원장”과 “지방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11조(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이하 “검토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검토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위원 중 3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을 지정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위원장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토분과위원회의 검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와 군·구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총공사비 10억 이상의 건설공사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3. 총공사비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공사

④ 검토분과위원회의 사업규모별 계획수립·시행 등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검토분과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건설공사는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른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분과위원장 임명 등)** ① 심의분과위원회 및 검토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 및 서기는 관련업무담당사무관 및 담당자로 한다.

**제13조(소위원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2. 설계심의소위원회(제10조에 따른 심의분과위원회 관련 소위원회)
  3.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 ② 소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 심의)** ① 제13조에 따른 소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 가.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분과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 나.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설계심의소위원회
  - 가.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나. 제7조제1항제5호중 심의분과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 3.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가.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분과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나.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확인·평가 등)** ① 위원장은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확인, 용역 및 시공 평가 등을 실시할 경우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설계경제성 검토 등 기술검토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회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이 제출한 심의의견서, 기술검토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심의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심의결과를 심의요청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심의요청 기관 또

는 부서장은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설기술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발주 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심의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참석수당·일비 및 여비·사전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심의수당 등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일괄·대안 설계심의 및 설계 경제성 등의 사전검토 등 위원회 참석 전에 진행하는 검토에 대한 비용은 따로 산정할 수 있다.

**제20조(심의수수료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위원회에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할 경우 심의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심의수수료 등의 부담에 관하여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시 소속기관 및 자치구·군에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2. 시비 지원 또는 시비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심의 요청하는 때

② 수수료는 위원회 심의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수수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징수 기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건설기술심의 수당 지급기준 및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산정기준

(제19조 및 제20조 관련)

1. 건설기술심의 수당 지급기준

가. 참석수당 : 참석수당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특급기술자 임  
금으로 지급

1) 1일 4시간 초과 : 전액 지급

2) 1일 4시간 이하 : 50% 지급

나. 일비 및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다. 사전검토비 :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난이도 별 구분 지급(건당)

1) 보 통 : 30,000원(입찰방법, 입찰안내서 등)

2) 복 잡 : 40,000원(기본설계, 실시설계, 정밀안전진단 등)

※ 사전검토비는 건당 지급하되 1회 최고 4건 이상 지급할 수 없다.

라. 산출기준 : 참석수당+일비+여비+사전검토비

2. 일괄·대안입찰 심의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수당 지급기준

가. 설계도서 검토비와 참석수당, 일비 및 여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나. 산출기준

1) 설계도서 검토비 : 참석수당(4시간 이하)×설계도서 검토 일수

2) 참석수당, 일비 및 여비 : 제1항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

(사전검토비 제외)

3.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등

가. 건설기술심의 수수료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산출한 심의수당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심의위원 식대 등 일괄·대안입찰 심의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심의를 요청하는 사람이 부담한다.